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02

발의연월일: 2022. 12. 8.

발 의 자:이동주·권인숙·김남국

김용민 • 박상혁 • 서동용

서영교 · 송갑석 · 유관석

이수진(비) • 천준호 • 최기상

최종윤 · 홍성국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 협상권을 명문화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

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신용카드가 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영세 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맹점과 신용카드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법률 제 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을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으로, "단체를 설립할"을 "협의할"로 하고, 같 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 드가맹점이 설립한 단체
-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그 연합단체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한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그 연합단체
-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수탁 기업협의회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제18조의3제4항제1호 중 "부당하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과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으로 정하는</u> 기준에 <u>해당하는</u>	<u>해당하는의하여 설립</u>
<u>신용카드가맹점은</u> 신용카드업	된 단체는
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	
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	
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u>협</u>
위하여 <u>단체를 설립할</u> 수 있다.	의할
<u> <신 설></u>	1.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설립한
	<u>단체</u>
<u><신 설></u>	2.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과 그 연합단체
<u><신 설></u>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의
	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그
	<u>연합단체</u>
<u><신 설></u>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
<u><신 설></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② • ③ (생 략)

별금지 등) ① ~ ③ (생 략)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1. -----금융위원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생략)

<신 설>

<신 설>

는 단체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 2. (현행과 같음)
- ⑤ 신용카드업자는 대형신용카 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 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1 을 초과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수 없다.
-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u><신 설></u>	⑦ 제3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과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산출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